

자료 IV

SEA WAYBILL(해상화물운송장)의 활용

1. Sea Waybill의 개요 및 개념

- ▶ 현행 우리 상법에는 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규정이 입법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1970년대 후반에 이미 구미제국에서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대신에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을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목적지에서 선하증권과 상환없이 SWB에 기재된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수 있도록 관례화되고 있음.
- ▶ 이러한 SWB이 세계해상운송에 등장한 것은 1977년 1월 영국의 11개 선사들이 영국선주협회(The General Council of British Shipping ; GCBS)의 권고로 이를 사용하기 시작함.
- ▶ 또한 ICC(국제상업회의소)의 「INCOTERMS 1990」(현재 INCOTERMS 2000)에서도 물품인도의 증빙서류로 해상화물운송장을 명시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 규칙(1993년 개정, UCP500)에서도 이러한 매매관습을 수용하여 해상화물운송장에 대한 별도의 수리규정(제24조, Non-Negotiable Sea Waybill)을 신설하였음.
- ▶ 이와 함께 1990년 6월 국제해사법위원회(Comite Maritime International)에서 「해상 화물운송장에 관한 통일규칙」(CMI Uniform Rules for the Sea Waybill, 1990)을 제정함.
- ▶ 이러한 해상화물운송장의 개념, 기능 등에 관해 유럽경제 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 ECE), 국제해운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 ICS) 등이 정의한 바에 의하면 'Sea Waybill'이란 운송

인이 운송을 위하여 화물을 수령(인수)하였거나 선적하였음을 인증(認證)하고, 그 화물을 운송하여 Waybill상에 기명된 수하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해상화물운송 계약의 증서로서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이라고 할 수 있음.

2. Sea Waybill의 기능

- ▶ 운송인과 송하인(화주)간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계약증서(evidence of contract for carriage of goods by sea)
- ▶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수령하였다는 증서(evidence of receipt for shipment)
- ※ SWB의 기능이 B/L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화물에 대한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document of title to the goods function)이 없다는 것임. 즉, SWB은 B/L과는 달리 운송인이 발행한 해상화물운송장 원본을 정당하게 소지하였더라도 화물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임.

3. Sea Waybill의 활용 가능한 화물

- ▶ 선하증권(B/L)을 유통 불가능한 해상화물운송장(SWB)으로의 대체가 가능한 무역거래 형태는 송하인과 수하인 간에 물품대금의 결재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즉 신용장(L/C) 방식이 아닌 단순 송금에 의한 거래이거나 NVOCC간의 Co-loading Cargo (consolidation cargo)의 경우 활용이 가능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음.
 - 개인이주화물 또는 개인용품

B/L(Bill of Lading)과 SWB(Sea Waybill)의 비교

구 분	B / L	SWB
화물수령증거 기능	있 음	있 음
운송계약증거 기능	있 음	있 음
화물권리증거 기능	있 음	없 음
요인증권성	있 음	있 음
화물인도와 운송증권 원본의 상환성	화물인도시 B/L 원본과 상환 필요	화물인도시 SWB 원본과 상환 불필요
수하인 기재방식	지시식 또는 기명식	기명식
정당한 수하인	적정히 배서된 B/L 소지인	운송계약으로 약정한 수하인 (SWB상 기명 수하인)
화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	B/L의 교부에 의한 B/L 취득자가 권리 취득	SWB의 교부로 권리가 이전되지 않고, 운송계약으로 송하인이 지정하는 자만이 권리 취득*
강행적인 적용법규	상법(해상법) Hague/Hague-Visby Rules 등	현재 SWB을 규율하는 강행법규 없음. 따라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름.

주) *:SWB에 의한 운송의 경우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송하인과 운송인이며, 이에 따라 수하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B/L 소지인처럼 운송물에 대해 B/L과 같은 권리가 없음. 다만 송하인이 그 권리를 수하인에게 이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하인이 지정한 제3자가 권리의 취득할 수 있음.

자료: 엄윤대, 「국제운송강론」, 일진사, 2003, p.160

- NVOCC간의 Consolidation Cargo
- 송하인의 대리인이 지정된 화물
- 다국적기업간에 이동(운송)되는 화물
- 매매 당사자의 신용에 의한 화물
- 견본품

4. Sea Waybill 활용의 장점

- ▶ 화물인도와 SWB의 상환 불필요(SWB원본 회수 불필요)
- ▶ SWB 소지여부와 화물인도청구권의 상관관계가 없어 적기 인도 가능.
- ▶ SWB 분실 위험에 따른 Risk가 따르지 않음.

5. KIFFA Non-Negotiable Sea Waybill의 주요 내용

- ▶ 양식(form)
 - 1997년에 제정한 KIFFA MT(Multimodal Transport) B/L Form과 동일
- ▶ 약관(terms and conditions)
 - 전면: 운송인은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화물을 인수함. KIFFA B/L의 약관 적용
 - 이면: 본 운송장은 화물에 대한 권리증권이 아니며, 국제협약이나 국내법의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가짐. 화물 인도는 기재된 수하인이나 그가 위임한 대리인에게만 인도됨.

KIFFA Non-Negotiable Waybill / 전면

Received by the Carrier, the Goods or the Container(s) or Package(s) said to contain goods herein mentioned(hereinafter called the 'goods')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unless otherwise indicated herein for shipment in accordance with instruction of the owner of the Goods as described herein. The Goods and instructions are accepted and dealt with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n the front and reverse of the Waybill(s) and all terms and conditions and clauses, printed or otherwise inserted on the KIFFA Multimodal Transport Bill of Lading(KIFFA MT B/L) which is authorized by Korea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s since 1997.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has signed the number of Waybill(s) stated below, the same tenor and date.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이상, 운송인은 화물 또는 여기에 기재된 화물의 포장단위 또는 컨테이너(이하 '화물'이라고 함)를 외형상 양호한 상태로 화주의 지시에 따라 선적할 목적으로 인수하였다. 화물과 운송에 관한 지시는 본 운송장의 전면 및 이면에 표기된 조건 및 규정에 의해 수용되고 처리되며, 1997년 한국복합운송협회가 제정한 KIFFA MT B/L에 삽입되거나 인쇄된 모든 조건, 조항, 약관 등이 적용된다.

그 증거로서 동일한 문언 및 일자의 아래 통수의 운송장에 서명하였다.

TERMS AND CONDITIONS OF NON-NEGOTIABLE WAYBILL(2004) / 후면

1. This Waybill, which is not a document of title to the Goods, is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liberties and exceptions of the KIFFA MT B/L and tariff, copies of which may be obtained from the Carrier's office and those of his authorized agents, and to the provisions set out below.
2. Except as otherwise specifically provided in this Waybill, delivery of the Goods will be made only to the Consignee named on the face hereof, or his authorized agent. The Consignee by presenting this Waybill and/or requesting delivery of the Goods, however, undertakes all liabilities of the Shipper hereunder.
3. The terms and conditions shall only take effect to the extent that they are not contrary to the mandatory provisions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or national law applicable to the contract evidenced by this Waybill.
4. This Waybill shall be effected subject to the "CMI Uniform Rules for Sea Waybills"(1990), Hague Rules(1924) and Hague-Visby Rules(1968).
5. Unless the nature and value of the Goods shall have been declared by the Merchant before the Carrier receives the Goods and is inserted in this Waybill, and the advalorem freight rate paid,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under US COGSA, where applicable, shall not exceed US\$500 per package or, in the case of Goods not shipped in packages, per customary freight unit.

1. 본 운송장은 화물에 대한 권리증권이 아니며, 그 계약조건, 한국복합운송협회 복합운송 선하증권과 Tariff상의 면책 등은 아래에 기재된 조항을 적용받는다. 운송인의 Office와 운송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부터 본 운송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2. 본 운송장에 특별히 제공된 것을 제외하고 화물은 단지 전면에 기재된 수하인이나 그가 위임한 대리인에게만 인도된다. 본 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수하인, 또는 화물의 인도를 요구한 자는 여기에 기재된 화주의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약관은 운송약관에 적용되는 국제협약이나 국내법의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가진다.
4. 본 운송장은 "국제해법회(CMI)의 해상운송장 통일규칙"(1990), 헤이그 규칙(1924) 및 헤이그-비스비 규칙(1968)을 적용받는다.
5. 운송인이 물품을 인수(수취)하기 전에 화주가 물품의 성질과 가액을 신고하지 않고 본운송장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종가운임이 지불되지 아니하는 한, 미국 해상물품운송법(US COGSA)이 적용되는 경우 그 법에 의한 운송인의 책임은 매 포장당 또는 포장 이외의 방법으로 선적된 경우 매 운임 단위당 미화 5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